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 정 1988. 5. 1 조례 제 21호
개 정 1989. 6. 22 조례 제 86호
1990. 6. 13 조례 제120호
1998. 6. 2 조례 제388호
1999. 7. 14 조례 제433호
2000. 12. 29 조례 제494호
2010. 7. 14 조례 제855호 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9. 6. 22, 2010.7.14)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0.7.14)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여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7.14)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와 부부 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개정 89. 6. 22)
2.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0.7.14)
3.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개정 2010.7.14)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0.7.14)

제4조(추천) 장학생은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서대문구 협의회장과 서대문구 새마을부녀회장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 서대문구 지회장(이하 “구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10.7.14)

제5조(선정) 구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서대문구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 심사하여 매 학기 초 선정한다.(개정 99. 7. 14, 2010.7.14)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7.14)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유공지도자의 자녀(개정 2010.7.14)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90. 6. 13, 99. 7.14, 2010.7.14)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7.14)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 지회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초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 7. 14)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보호자인 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재적학생수의 80/10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전부개정 2010.7.14)

② 구 지회장은 제1항의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개정 2010.7.14)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제11조(장학기금 확보) 장학기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반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98. 6. 2, 2010.7.14)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결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89.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